

영업용 건물내의 식사광경의 방영도 사생활권 침해에 해당

Stessman v. American Black Hawk Broadcasting Co.

416 N.W.2d.685(아이오와주 대법원,1987.12. 23)

사실개요

텔레비전 방송회사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원고를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하여 방영하자, 원고는 그녀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하였다. 원심법원은 소장에 청구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나 아이오아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판결요지

원고가 영업용 건물의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개인용 별실에 있었거나 합리적인 감성을 가진 통상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촬영하여 텔레비전에 방영하는 것은 격리된 상태의 부당한 침해로써 사생활권 침해의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라보라토 판사의 견해

이 사건에서 테레사 스테스만(Theresa Stessman)은 어메리칸 블랙호크 방송회사(이하 블랙호크라고 한다)를 상대로 한 그녀의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의 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지방법원은 스테스만의 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의하면 그녀의 사생활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아이오와 민사소송규칙 제 104(b)조에 의하여 청구원인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 달라는 블랙호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심에 이르러 스테스만은 정당한 심사의 범위내에서 판단하면 그녀의 소장에는 구제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에 기한 청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스테스만의 소장이 그 기재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판결에 따른 재심리를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스테스만의 소장에 의하면 그녀는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블랙호크의 텔레비전 기자에게 그녀를 찍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자는 그녀를 촬영하고 그 필름은 블랙호크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되었다. 소장에는 블랙호크의 그 대리인과 피용자를 통한 위와 같은 행동은 그녀의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거나 그녀의 모습을 텔레비전에 방영되지 아니하도록 할 원고의 권리의 부당한 침해라고 기술되어 있다. 스테스만은 이러한 그녀의 사생활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지방법원은 이러한 소장의 기재는 소송을 이유있게 하는 원인을 기술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블랙호크의 신청에 의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스테스만은 소장에 기재된 사실은 사생활 침해의 다음과 같은 네 경우 중 적어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다른 사람의 격리된 상태의 부당한 침해;

- (2) 다른 사람의 초상의 도용, (3)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
(4) 다른 사람을 공중에게 부당하게 잘못 보이게 하는 공개. 이에 반하여 블랙호크는 소장 기재사실은 사생활 침해소송의 요건을 기술하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I. 심사의 범위

아이오와 민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소장에는 원고가 구제 받을 권리 있음을 나타내는 청구원인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원고는 특정한 법적 이론을 밝힐 필요는 없으나 피고에게 정당한 통지를 하기 위하여 일견하여 확실한 청구원인을 간단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주요사실의 기재는 명백히 요구되지 아니한다. 청구원인이 없다 하여 위 소송규칙 제 104(b)조에 의하여 각하된 사건의 소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고려하고 모든 의문과 불명확한 점을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해결하여야 한다. 소장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각하 판결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는 「단지 원고가 그 주장 아래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사실관계에서도 어떠한 구제방법이든 허용될 수 있는 청구원인을 기술하지 못하였다고 확실하게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그 신청은 공지의 사실로 인정되는 사실 이외에는 문제되고 있는 소장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삼을 수는 없다. 」 Curtis v. Board of Supervisors, 270N. W. 447) 공지의 사실은 상식이거나 확실한 증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소장기재의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청구원인이 없다 하여 소가 각하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제 이 사건의 소장에 대하여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기로 한다.

II.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우리는 Bremmer v. Journal-Tribune Publishing Co., (76N. W. 2d762<1956>) 사건에서 처음으로 사생활권 및 그에 기한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 사건에서 사생활권은 「개인이 홀로 있을 수 있고 격리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에 규정된 사생활 침해의 불법행위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고 적용하였다. 리스테이트먼트 제 652A(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침해된다

(a) 다른 사람의 격리된 생활의 부당한 침해, (b)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의 도용; (c)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 (d) 다른 사람을 공중에게 부당하게 잘못 보이게 하는 공개」 스테스만의 소장에는 문제의 필름의 촬영과 방송은 그녀의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녀의 모습을 텔레비전에 방영되지 아니하도록 할 그녀의 권리의 부당한 방해이었다」라고 주장되어 있다. 이 주장은 Bremmer 사건과 리스테이트먼트에서 정의된 사생활권의 침해에 대한 청구의 간결한 진술에 해당한다. 그것만으로도 이는 블랙호크에게 스테스만의 청구를 공정하게 통지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블랙호크는 소장은 현 상태로는 스테스만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 반면 스테스만은 그녀의 소장에 기하여 리스테이트먼트 제 652A(2)조의 네 요건 중 적어도 한 요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분석을 위하여 논의를 리스테이트먼트 제 652A(2)조 (a)의 격리된 생활의 침해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첫째 피고가 고의적으로 권고가 자신 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설정한 격리된 생활을 침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둘째 그 침해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심하게 도발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공중에게 드러나 있다면 피고는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스테스만은 그녀의 소장에 기하여 그녀의 격리된 상태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호크는, 스테스만은 그녀가 누구든지 그녀를 관찰 할 수 있고 공중에게 공개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이 요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블랙호크는 그녀가 그녀의 생활을 격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블랙호크가 그녀의 격리된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사생활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격리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녀는 공중에게 공개된 영업용 건물에 있었다. 누구든지 그 건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다. 」 우리는 블랙호크가 설정한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면, 스테스만은 이 요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테스만의 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그녀가 격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스테스만이 여러 식당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은 개인용 별실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용 별실 안에 있는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격리된 상태에 대하여 심하게 도발적인 침해일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한 법원은 예리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법적으로 격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나아가 일부 사람들이 원고를 볼 수 있다 하여도 그가 그외의 사람들로 부터 격리된 채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서 가족들과 초대된 손님들과 만나지만 그로써 텔레비전 카메라에까지 문을 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Stessman v. National Broadcasting Co., Inc.,: 632F. SuPP. 1282) 우리가 스테스만이 실상 격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장의 기재만으로 그녀가 격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블랙호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소장 기재사실과 공지의 사실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사실들을 근거 삼으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필름이 어떻게 스테스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 사람의 모습 중에는 합리적인 감성을 가진 통상의 사람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중에게 전시되어서는 아니될 경우도 있다. 예컨대 Daily Times Democrat v. Graham(276 A1a, 380<1964>) 사건은 원고가 시골장의 요술의 집을 떠날 때 그녀의 옷이 바람에 불려 벗겨진 모습을 찍은 사진의 공개는 사생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명백히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민사소송규칙 제 104(b)조에 기한 소각하의 신청보다는 위 규칙 제 236 조에 기한 약식판결의 신청이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일 수도 있다. 우리는 법률상 당연히 사생활권의 침해에 기한 청구가 성립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 사건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 달라는 신청의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스테스만의 소장은 구제방법이 부여될 수 있는 청구원인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지방법원이 민사소송규칙 제 104(b)조에 의하여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판결에 따른 재심을 위하여 이 사건을 환송한다.